

	보 도 자 료 2020. 6. 1 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최고의 보험전문 서비스기관
작성부서	손해보험부문 특종보험팀	작 성 자	권순일 팀장 (02-368-4216)
배 포 일	2020년 5월 29일 (총 6매)	홍보담당	김진환 선임 (02-368-4389)

제목 : <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책임보험> 할인·할증제도 조기 도입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

- 보험개발원(원장 강호)에 따르면, 중고 자동차 거래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 책임보험의 할인·할증제도가 6월부터 도입될 예정임
 - 동 제도는 당초 2021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, COVID-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능점검사업자와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가 협의를 통해 조기 도입을 결정함
 - * 할인·할증제도 변경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
- 할인·할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%의 보험료 할인*을 적용받게 됨
 - * 2021년 6월 이후에는 최대 50% 할인
- 계약자의 대부분인 89.3%(142개 업체)가 할인적용 대상이며, 할증대상은 3.8%(6개 업체)에 불과하여 전체 보험료 인하효과는 22.2% 수준으로 나타남
- 동 제도 도입은 성능점검 업무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고, 이는 추가적 보험료 인하로 나타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
 - 현재 평균 보험료 수준인 3만9천원(국산외산, 차종 등에 따라 차등)이 6월 이후 3만원대 초반으로 인하될 예정이며,

- 성능점검 업무가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수행된다면, 2021년에는 2만원대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

□ 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책임보험은 '19년 6월 도입되어, 금년 2월 까지 5천건 이상의 보상처리가 이루어지는 등 중고자동차 거래 투명성 제고와 매수인의 권익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

○ 최근 6개월간 월 591건~952건 규모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으며, 평균 손해액은 109만원 수준임

○ 도입 이후 전체 실적을 분석하면, 외산차의 사고율(2.1%)이 국산차(1.0%)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, 외산차의 평균손해액 역시 194만원으로 국산차(74만원)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

- 최대 손해액에서도 국산차가 2,151만원인 반면 외산차는 3,774만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

〈표 1〉 자동차 성능상태 책임보험 사고건수 및 평균손해액

구 분	사고건수	평균손해액
국산차	3,948건	74만원
외산차	1,542건	194만원

* 통계기간 : 2019년 6월 ~ 2020년 2월

□ 하반기에도 국토교통부 및 손해보험사는 협업을 통해 중고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

○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처리를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요율 체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. 끝.

<붙임 1> 할인·할증제도(Merit & Demerit system) 변경내용

○ 할인·할증제도는?

- 손해율에 따른 할인·할증제도는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하고 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며, 자동차보험·근재보험·선박보험 및 적하보험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
-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경우 점검자의 직무숙련도, 검사장비, 성실성 등의 요인에 따라 계약자간 손해율 차이가 크게 나타남. 따라서 동 제도 도입을 통해 손해율 관리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.

○ 변경내용

(기존)

3개년의 계약실적으로 평가하되 계약실적이 2개년 미만인 경우 조정계수 변동폭의 1/3을, 3개년 미만인 경우 2/3를 적용하며, 1개년 미만인 경우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음

(변경)

1개년의 계약실적으로 평가하되 계약실적이 1개년 미만인 경우 조정계수 변동폭의 1/2을 적용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음

○ 조정계수 (예시)

- 순손해율 85%미만 : 0.5 ~ 0.85
- 순손해율 85%이상~115%미만 : 1.0
- 순손해율 115%이상 : 1.15 ~ 2.0

<붙임 2>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 책임보험 주요내용

□ 도입배경

- 2019년 기준 중고차 거래규모는 약 370만대(당사자거래 포함)로 추정되고 있으나, 차량의 성능 및 매매와 관련된 정보가 불투명하여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
- “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기록부”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차량구입에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되며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상을 통한 거래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
 - 그러나 “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기록부”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이 지속*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보험가입이 의무화 됨 (법률개정 2017.10)

*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(2019.8)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 중 632건(79.7%)이 ‘성능·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’이며, 구체적 내용은 ‘성능·상태 불량’(572건, 72.1%), ‘주행거리 상이’(25건, 3.2%), ‘침수차량 미고지’(24건, 3.0%) 등으로 나타남

□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 책임보험이란?

-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하여 매수자(소비자)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,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

<중고자동차 유통 흐름과 성능점검책임보험>

① 차량매입(매매업자) → ② 경정비, 판금, 도색 (정비업자) → ③ 성능검사(성능점검업자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) → ④ 번호판보관, 제시신고(매매업자) → ⑤ 차량전시 및 광고 → ⑥ 상담·매매 (차량상담, 성능점검기록부 소비자에 제공) → ⑦ 차량출고 및 자동차이전등록(**성능점검책임보험 보장 개시**) → ⑧ **자동차 성능이상시 보험사 정보 및 정비업소 입고** → ⑨ 수리비 지급 및 차량출고(**보험사가 정비업소에 직접지급**)

○ 법률근거 :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

제58조의4(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)

- ①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·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.
- ②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○ 가입대상차량 :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자동차(2017년도 기준 연간 130만 대로 추정). 다만,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, 대형 승합차, 중·대형 화물차는 제외됨

○ 보상기준 :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내의 사고 (수리비 전액보상, 동일성 및 용도변경, 튜닝 등의 경우 약정 비율의 금액을 보상)

* 성능점검업자는 사고 처리시 자기부담금 10만원을 부담

○ 보험료 수준(예시) : 차종별, 주행거리별로 상이

- 승용차 (국산, 1600cc, 8만~10만킬로미터) : 30,000원~34,000원
- 승합차 (국산, 16인승, 8만~10만킬로미터) : 35,000원~43,000원
- 화물차 (국산, 1톤이하, 8만~10만킬로미터) : 42,000원~54,000원

* 상기 보험료는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상이함

□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사고보상 예시

[Q1]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A차량을 1,000만원에 구입하고, 당시 교부 받은 ‘성능상태점검기록부’에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차량운행 중 이상이 감지되어 매매업자에게 받은 ‘보험안내서’에 나온 연락처에 전화 후 정비소에 입고함. 이 경우 무조건 수리보증이 되는지요?

[A1]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내에 고장이 발생하고 보험약관에 의한 손해일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보상한도는 해당 차량의 차량가액(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기준)과 1억원 중 작은 금액이며 수리비 중 10만원은 성능점검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

[Q2] 그럼 어떠한 항목을 보상하는지요? 제 차량은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

[A2]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국토교통부 고시(제2018-632호)에 기재된 ‘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’에 따릅니다. 예를 들어 엔진(원동기)은 엔진오일 유량 및 누유(미세누유 포함) 혹은 냉각수 누수(미세누수 포함)가 원인이 되어 고시항목에 기재된 부품이 고장난 경우 해당 부품의 수리비나 교체비용을 지급합니다.

[Q3] 차량인수 후 살펴보니 루프패널이 찌그러져 있음. 수리하기 애매한 부위인데 보상이 되나요?

[A3] 후드, 루프패널, 도어 등 외관부위의 경우 수리비 대신 차량가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합니다. 약관상 루프패널의 경우 5% 이므로 차량가액 1천만원인 차량은 50만원을 보상합니다(보상액 중 5만원은 성능점검사업자가 부담함).

[Q4]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영업용차량으로 사용된 기록이 없는데 확인해보니 영업용택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. 이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?

[A4] 차량의 용도변경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에서 차량가액의 9%를 보상하므로 차량가액 1천만원인 차량은 90만원을 보상하여 드립니다(보상액 중 5만원은 성능점검사업자가 부담).